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Jan 23, 2020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Key Contacts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 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 는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E set) 발표

(19.12.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서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17개 원칙과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고려사항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적용사례를 마련함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구성체계>

(A) 설계·운영 개념체계('18.6)		원칙적 적용
	(D) 설계·운영 적용기법('18.10)	자율적 지침
	(E) 설계·운영 적용사례('19.12)	
(B) 평가·보고 모범규준('18.6)		원칙적 적용
	(C) 평가·보고 적용기법('18.10)	자율적 지침

▷ [해당 게시물 링크](#)

- 본 적용사례는 대형주권상장법인이 수행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프로젝트 결과 등을 기초로 마련한 사례로서 기업별로 상이한 업종특성, 규모, 관련 비용과 효익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시 참고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新·舊 모범규준 및 FAQ 개정

(19.12.2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 新 모범규준 개정

- 사업연도 중 매각 또는 중단한 사업부분 평가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적용기법 개정
- 취약사항 보고 수준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등 개정
- 기타 자구수정 및 용어통일
- 개정일(2019.12.2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A\) 설계-운영 개념체계 링크](#)
 - ▷ [\(B\) 평가-보고 모범규준 링크](#)
 - ▷ [\(C\) 평가-보고 적용기법 링크](#)
 - ▷ [\(D\) 설계-운영 적용기법 링크](#)

· 新 모범규준 적용 FAQ 개정

- FAQ 34 번 개정: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과정에서 예외사항이 발견된 경우
- FAQ 31 번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구분하는 이유
- FAQ 42 번 개정: 감사(위원회)의 평가의 수행 방식
 -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FAQ 개정 안내 링크](#)

· 舊 모범규준 개정

- 외부감사법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만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보고서 예시 별첨 등에서 "유의한 미비점"까지 표시하도록 한 내용 삭제
- 개정일(2019.12.2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舊 모범규준 개정 안내 링크](#)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K-SOX Audit Preview: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삼성KPMG K-SOX TFT는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미국의 ICFR(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하는 미국의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을 분석하고, 제도적 차이를 비교하여 본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를 앞둔 한국의 기업은 내부통제 환경 구축에 중요성을 두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감사 도입 이후에는 재무제표 왜곡이나 수정 관련된 사유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비만으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확인바랍니다.

[출처] 삼성 KPMG K-SOX TFT

「Benchmarking SOX Costs, Hours and Controls」



Protiviti는 2010년부터 10년동안 SOX Compliance 관련 서베이 리포트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700개사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Protiviti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인적분할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2019.12.5)

Q.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로, 2019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며, 사업형 지주회사임. 지난 10월 기준으로 인적분할하여 분리된 회사가 2개 있는데, 인적분할하기 전 9개월 운영한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A. 2019년 12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에 대하여 추가 조건 없이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관련 근거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55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성과에 대한 인사평가 반영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9.12.4)

Q.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평가 대상이 법규정이나 모범규준에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담부서만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려 하는데 적절한가? 아니면 관련 있는 모든 임직원을 인사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A.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다만, 비공식적 의견은 아래와 같음

‘회사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는 ‘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대표자 등’을 오직 전담부서로만 해석하여 전담부서 직원만을 인사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근거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 **삼정 KPMG "코스피 200 기업 34 곳 내부신고제도 규정 미흡" [연합뉴스]**
 - 코스피 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 현황 점검 결과,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이 34 곳에 달함
 -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한공회, "회계·IT 역량 겸비 융합형 인재육성에 박차" [데일리 NTN]**
 - 기업들의 정보시스템 수준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으로 감사에 회계와 IT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년 4학기 과정의 '융합 회계아카데미' 개설
- **감사인연합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고경영자의 의지(Tone at the Top)가 관건" [마켓인사이트]**
 - 한국감사인연합회, 지난 12월 4일 제9회 감사인포럼 개최
 - 이재은 홍익대 교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장), 강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Tone at the Top) 강조
- **[회계개혁 1년] 진통속 출발한 `K-SOX`...기업 미래성장 발판 됐다 [매일경제]**
 - 2017년 10월 31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등 회계개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많은 변화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개혁 성공적 정착 위해 노력 지속할 것
- **정부·회계사회 "이젠 내부회계관리 강화"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 (사) 감사위원회포럼, 지난 12월 3일,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에서 내부감사인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역할 중요성 강조
 - 최종경 한공회 회장,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감독할 것을 당부
- **금감원, "비상장사 내부 회계 통제 '미흡'...감사의견에도 불리" [스페셜경제]**
 - 금융감독원, 최근 3년(2015~2017 회계연도)동안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 점검하여 134건 위반 사항 적발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하지 않은 105개사 중 비상장사가 101곳... "비상장사의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 상태 등 원인"
-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첫 감사...핵심감사사항 적용 확대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2019 사업연도 결산시 고려해야 할 7대 중점 유의사항 안내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 강조
- **금감원, 내년 新리스크기준 적정성 등 회계이슈 중점심사 [뉴스원]**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에게 新리스크기준 적용, 충당부채·우발부채, 장기공사계약, 유동·비유동 분류 등 4 가지에 관한 적정성을 내년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로 안내

해외 동향

- **SEC Releases Statement On Key Reminders For Audit Committees [Mondaq]**
 - 美 SEC, 12 월 30 일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관련 감독 역할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강조
 -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 외부감사인 독립성, GAAP, 재무보고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내부통제 제도), 비 GAAP 측정, 리보금리(LIBOR), 핵심감사제(CAM) 등을 강조함
- **PCAOB Chair Sheds Light on Recent PCAOB Initiatives [JDSUPRA]**
 - 美 PCAOB 위원장 William Duhnke, 지난 12 월 3 일 PCAOB 의 최근 계획 중 강조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감사품질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이해관계자 관여를 통한 투명성과 접근성 증대, 경영의 탁월성(Excellence) 추구, 임직원 개발·독려·보상
- **SEC Is Expected to Propose Further Loosening of Auditor Independence Rules [WSJ]**
 - 美 SEC,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규정 완화 추진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2020 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 주 최: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 일 시: 서울(1.30), 부산(1.30), 광주(1.31), 대구(2.4), 울산(2.5)
- 장 소: 대한 상공회의소(서울), 지역 상공회의소(부산, 광주, 대구, 울산)
- 대 상: 기업 실무자 및 회계사(회계법인·감사반)
- 신 청: [해당 금융감독원 공지](#) 참조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허세봉 부대표

K-SOX TFT Leader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이종우 전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용기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전원표 상무	조선, 건설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성명, 직급 클릭으로 이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